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페달 오조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구 정비(안 제4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5월경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령운전자 연령기준 하향,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교통안전 교육 보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약 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었으며,
 - 판명이 불가능한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해당 사고 중 약 7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 조작 미숙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아울러 생계유지 필요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운전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과 함께,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페달 오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 수단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서울 외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 140명을 대상으로 방지 장치를 지급하여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200여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설치형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대당 약 40만~50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

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는 조문 표기,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구를 명확히 한 사항임.
- 안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한 사항임.
 - 제1항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그 밖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관련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속페달 오조작 등 고령운전자에게서 빈발하는 사고 유형에 대응하여,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에 더하여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7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 의 자: 이성수 · 유승용 · 이순우
전승관 · 남완현 ·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페달 오조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 안전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정비(안 제4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2조”를 “제2조”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3. 그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u>도로교통법</u>」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p> <p>2. · 3.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u>조례 제2조</u>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p> <p><신 설></p>	<p>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 「<u>도로교통법</u>」 제93조제1항제20호 -----.</p> <p>1.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u>제2조</u> -----.</p> <p><u>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u>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p>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 제7조 (생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